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

일 시 _ 2012. 10. 25(목) 오후2시

장 소 _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_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_ **Home plus** **홈플러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www.sswkorea.org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	1
2. 인사말	3
3. 축 사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5
4. 주제발표 : 신 영 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5. 토론자:	
1)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21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5
3)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29
4) 윤철수 국민의료개혁연대 대표	35
5)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7
6)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61
6. 부 록 : 본 연구회 관련 언론 기사	65

프로그램

1부.....사 회: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본 연구회 이사)

- 1)개회선언
- 2)국민의례
- 3)인사말씀.....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4)참석자 소개.....사회자
- 5)축 사 :

김 정 례 前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2부.....사 회: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 1)주제발표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2)토론자

- 1)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 4) 윤철수 국민의료개혁연대 대표
- 5)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6)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3)참관자 질의/응답

- 4) 마무리 발언 : 신 영 석 부원장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과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어느 곳을 가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또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다 보니 많은 행사들이 있는 분주한 나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래저래 더 바쁜 일정이지만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유양근 부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감일정으로 오시지는 못했지만 축사 글을 보내주신 오재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11%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장수시대가 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국가의 사회보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에 욕구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80%**에 비해 우리나라는 **62%**로 경제력 수준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사용자 절반, 가입자 절반)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인데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이원적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장성 강화에 대비한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 직장인의 부담은 **28조2592억 원**(올해 보험료 기준)에서 **31조9397억 원**으로 **13.0%** 증가되고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7조3166억 원**에서 **3조6361억 원**으로 **50.3%** 감소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개편안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비례해 공평하게 부담하게 되는 소득 중심의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들의 무임승차 문제, 부과소득의 범위, 소비세 부과의 역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도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 3분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공약을 내놓았는데朴후보는 무상의료에 필요한 최대 56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세금으로 떠안기는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재원 조달 방안을 다원화해 의료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현 시스템의 개선을 밝혔습니다. 또 文후보는 건강보

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등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고, 安후보 역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간병서비스,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확대 적용을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는 與, 野 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어느 후보 , 어느 정당이 내놓는 공약이든 상관없이 채택하여 실행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번 개편안과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신영석 부위원장님(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로 함께 참여 해주신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님, 윤철수 국민의료개혁연대 대표님, 이준우 교수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님,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님,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님(토론발표 순) 감사합니다.

주제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께서는 이 주제와 관련 이미 많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의견도 듣고 가셔서 정책에 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되어 우리 국민 특히 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행복지수가 올라 갈 수 있는 대안 모색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5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축 사

유 양 근 부총장
(강남대학교 / 본 연구회 고문)

존경하는 김집례 전 복지부 장관님,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회장님, 오늘발표를 맡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님, 토론을 해주실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김동섭 선생님,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님,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님,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현대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각종 건강 지향적 생각은 물론 보험관련 민영 보험이 급격히 신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이원적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장성 강화에 대비한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이번 국감기간에 거론 된바와 같이 현재 62.7%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적어도 OECD 평균 80%까지 높여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시기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한국 건강보험정책의 획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국민보건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선진 복지사회에 진일보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선진사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주제 발표는 물론 대한민국 보험정책의 밝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열띤 토론장이 되어 국민의 건강과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선진사회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토론회를 위해 수고하신 이정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발 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I. 보험료부과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표 1〉 보험료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요소)	임금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 500만원 초과세대: 소득, 재산 자동차 - 500만원 이하세대: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 ~ 7,810만원	20점 ~ 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주: 1)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사용자부담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하여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령	4구간[(1.4점~ 6.6점)×인원]	30등급	*과세소득	75등급
	재산	7구 간 [(1.8점~12.7점)]			
	자동차	7구간[(3.0점~21.3점)×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원		(과세소득+재산+자동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18.6%)	

□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

○ 부과체계의 이원화 : 2002년 재정통합을 끝으로 건강보험이 완전히 단일보험체계로 거듭 태어났으나 부과체계는 아직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음.

- 따라서 지역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함. - 특히 실직에 의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재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음.
-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다름.

○ 형평성 결여

- 지역간 부과요소의 차이
- 지역간 자격의 차이
- 지역간 소득 산정 기준의 차이
-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제기됨.
-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름없으나 특수형태의 자영업자¹⁾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 부과체계의 역진성

-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있음.
-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유사하게 재산의 경우도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하여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음.

○ 부과체계의 복잡함

-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음. 따라서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움.

1) 자영업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근로자와 유사한 피고용 형태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로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외판원, 퀵서비스 종사자, 가내-재택근무자를 말하며, 그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국민일보, 2006.6.4).

II. 외국의 부과체계

1. 독일

□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는 총소득에 대해 15.5%로 단일화된 보험료를 적용

- 그 중 고용주는 7.3%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8.2%를 부담하는데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0.9%의 보험료 추가
- 의무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퇴직연금과 같은 이른바 보장급여(Versorgundbezüge) 그리고 기타 노동소득²⁾ 등이 보험료 부과 대상임.
-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이 고려됨.
 - ‘전반적 경제적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입을 의미함.
 -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의무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공통적으로 2011년 현재 보험료산정상한선인 월 3,712.5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2. 프랑스

<표 3> 프랑스 의료보험 재정주체별 부담비율

구분	내역		비율(%)	
보험료	피보험자	총임금의 6.8%(1991)→ 5.5%(1997)→ 0.85%(1998~)*	3.4	54.5
	고용주	총임금의 12.8%(1998) → 13.1%(2010)	51.1	
정부	국고보조	보험료 결손에 대한 보상		4.9
	일반사회기여금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34.6
	사회보장목적세	담배소비세, 알코올소비세, 의약품광고세, 자동차보험세, 전문계약업체세, 연대사회기여금, 누적채무변제를 위한 기여금(CRDS)		4.1
의료보험 간 조정				0.3
기타				1.6
계				100

주) French Ministry of Health (www.sante.gouv.fr)

2)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시간 노동으로 받는 일회성의 노동보수 등을 의미함.

□ 일반사회보장기여금(GSC)

- 가동소득(일을 하거나 기계를 작동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7.5%, 연금에 대해서는 6.6%, 실업수당 등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6.2%,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8.2%,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7.5% 그리고 도박수익에 대해서는 9.5% 부과
-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에 대해서는 3.8%로 경감된 요율을 적용하는데 전체 프랑스가구의 절반이 혜택을 받고 있음.(Chevreul, K. et al., 2010: 67).
- 가동소득 및 이전소득은 사회보험기관이 징수하고 자산소득, 투자이익 및 도박수익은 세무서가 징수
- 징수된 일반사회기여금의 수입은 가족수당(1.1%)과 노령연금보험(1.3%)에 투입되고 의료보험에는 가동소득, 자산소득, 투자이익 및 도박수익에 대한 수익의 5.1%,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3.8%가 투입됨.

□ 사회보장 목적세

- 사회보장목적세는 1967년 자동차 보유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 사회보장보험료가 부가적으로 부과된 것에서 시작
- 그 후 1983년에 사회보장목적세로 알콜소비세, 담배소비세, 의약품광고세 등이 차례로 도입
- 1996년에는 누적채무변제를 위한 특별부담금(CRDS) 도입
- 사회연대기여금 : 연간 총매출액 5백만 프랑 이상의 회사들에게 부과되며 전국상공업자자치조직조정금(ORGANIC)가 회사의 신고에 기초하여 연 2회 징수
- 프랑스 사회보장 전체 누적채무를 변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1999년 시작된 EU통합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GSC와 같은 성격의 사회연대기여금을 1996년부터 2009년 1월까지 13년에 걸쳐 시행하였고 그 후 5년간 연장되어 시행하고 있음 : 부과대상은 장해연금, 실업수당 등의 거의 모든 소득으로 GSC보다 적용범위가 넓으며 요율은 0.5%임.
- 1983년 「가공담배보험료」를 일종의 목적세로 신설하였는데, 세율은 담배도매가의 5%였으며 수입은 전액 일반 의료보험에 충당
- 1987년에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여 그 수입의 6.39%를 일반 의료보험에 충당하였고, 1983년 알콜보험료를 신설하여 수입을 전액 일반 제도에 충당
- 1983년 의약품의 광고, 선전이 약의 과잉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약품광고부담금 신설 :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의약품 등의 판매촉진과 정보제공을 위한 비용을 부과기준으로 당해 연도 국내 총매출액에 대해 1%를 부과하는데 공적의료보험 약제비가 7백6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0.03%의 추가 세금 부담
-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세율은 1967년부터 3%, 1979년부터 6%, 1982년부터 12%, 1985년부터 15%임. :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각 자동차보유자가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어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허의약품(original)을 개발하는 제약업체도 기여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개발한 기업이 약국 등에 직접 그 약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해 2.5%가 부과되고 징수는 사회보장중앙기구(ACOSS)가 관할하고 수입은 모두 일반보험에 보조됨.

3. 오스트리아

□ 보험자들이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어 보험자별로 부과대상 소득의 수준이 다르고 보험료율도 부과대상소득의 6.4%에서 9.1%까지 다양함.

- 각 보험자들 간에 보험료율이나 본인 부담률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는 보험료부과 상한선이 3,750유로이고 보험료부과소득의 7.5%를 부과하는데,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3.55%를 근로자가 3.95%를 부담하고 육체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가 3.75%씩 같은 비율로 부담

<표 4> 오스트리아의 의료보험의 보험료율(2005)

(단위: %)

구분	보험료율	고용주부담	근로자부담
사무직노동자	7.50	3.55	3.95
육체노동자	7.50	3.75	3.75
기타*	9.10	9.10(자영자 단독 부담)	
공무원	7.70	3.60	4.10
농부	7.50	3.70	3.80
학생	7.40	3.70(연방정부)	3.70(학생)

주) 기타 직종은 가사보조원, 관광안내원 등 주로 자영자임.

주) 출처: Hofmarcher et al. 2006: 76.

4. 일본

□ 피용자 건강보험(직장보험)의 재원

-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표준보수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보험료율은 6.6%~9.1%
- 평균보험료율은 8.2%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4.1%씩 동일하게 부담
- 조합관장의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그 사업내용 및 재정 상태에 따라서 3%~10% 사이에서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 피보험자보다 고용주의 부담비율이 약간 더 높는데 2005년 평균보험료율은 7.4%로 고용주는 4.1%, 근로자는 3.3% 부담
- 8.2%의 보험료율은 700인 이하 중소조합의 가입자에게 해당됨.
- 정부관장보험에서는 보험료 비중이 80.9%이며, 국고부담은 18.8%이고, 조합관장보험은 보험료가 88.4%, 국고보조가 0.1%임.

□ 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의 재원

- 지역보험료 책정은 균등보험료와 소득할당보험료, 자산할당보험료로 각각 책정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 보험세 부과 가능 : 일반 피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세의 표준과세 총액은 예상되는 총비용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예상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65/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분의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각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비용 금액에서 국고부담 예상액 및 퇴직피보험자 등과 관련한 노인의료비의 각출금의 1/2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표준과세총액 = {(일반피보험자 총 급여비 - 본인부담금) × 0.65} + {노인보건비 - (본인부담금 + 퇴직피보험자 의료비) × 0.5}

○ 표준과세총액을 기초로 표준비율에 따라 소득할 총액, 자산할 총액, 피보험자 균등할 총액 또는 세대별 평등할 총액 산출

○ 건강보험료(직장보험)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 부담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수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

<표 5> 일본의 건강보험 개요

(단위: 만엔, 억엔)

	시정촌국보	국보조합	건보조합	협회건보	후기고령자진료제도
피보험자	자영업자, 무직 등	직종자영업	대기업	중소기업	75세이상 고령자
보험자수	1788	165	1497	1	47
가입자수	3597	352	3034	3471	1346
가입자 1인당 평균소득	79	298	293	218	73.7
가입자 1인당 진료비	28.2	16.7	12.6	14.5	86.3
가입자 1인당 보험료	8.3	12.5	9.1	8.9	6.5
(사용자부담 포함)			20.3	17.7	
국고예산(A)	30274	24936	24	10447	37340
전체보험료(B) (사용자부담분 포함)	29855	37373	27609 (61590)	30892 (61437)	8749
전체예산(A+B) (2010년 예산 기준)	60129	62309	27633 (61614)	41339 (71884)	46089
국고비율(A/(A+B))	50.35%	40.02%	0.09% (0.04%)	25.27% (17.00%)	81.02%
전체 보험금부액	101435	5878	38228	50330	116160
보험금부액 비율	29.85%	49.95%	0.06%	20.76%	32.1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10년 10월 기준)

5. 스위스

□ 스위스 의료보험체계 :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기본의료보험과 특수한 직역 또는 상황(사고, 장애 등)이 가입조건이 되는 사회보험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보충적 의료보험으로 이루어짐.

- 가입자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에 두 번까지 바꿀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수준으로 경쟁
- 개별 보험회사들에 따라 가입자의 본인부담율 차등
- 기본보험에서는 300 스위스 프랑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본인부담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적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음.
- 의료보험에는 보너스제도가 있어서 매년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차 더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됨.
- 의료보험 가입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며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보험료도 칸톤(canton)에 따라, 보험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험급여 범위는 동일

□ 제도별 보험료 부과 방식

- 기본의료보험 : 기본의료보험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없고 스위스 국민들은 보험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보험회사는 가입희망자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수준을 가지고 경쟁하되, 급여항목을 차별화하여 경쟁할 수 없음.
 - 보험회사들은 각 지역별로 의료비지출 예상액에 기초하여 보험료 산출 : 보험료는 매년 발표되기 전에 연방 사회보장청의 감사를 받으며, 칸톤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용한 정보와 자료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보충의료보험 : 기본의료보험과 별도로 보충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스위스 국민들의 1/4 만 가입 : 기본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이 보충의료보험을 통해 수익 창출가능
 -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기본의료보험과 달리 보충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희망자의 위험부담과 연동하여 결정

Ⅲ. 직역간(직장과 지역) 소득 및 생활실태 분석

□ 제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한 직장, 지역 간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 실태

- 지역가입자의 평균 총소득은 33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업소득이 71.7%인 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의 경우는 4106만원으로 지역보다 764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8%로 지역가입자 비율 71.7% 보다 낮음.

□ 소득계층별 분석

-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1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소득은 월등히 적는데 생활비나 총자산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의 경우도 지역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자산분포가 더 다양하고 넓게 분포하고 있음.

□ 계량모델

$$\begin{aligned} \text{기여능력}_j = & \alpha \cdot \ln(\text{근로/순사업소득})_j + \beta \cdot \ln(\text{기타소득})_j + \gamma \cdot \ln(\text{총자산})_j + \delta \cdot \ln(\text{자동차가치})_j \\ & + \Sigma \eta \cdot \text{경제활동참가}_j + \theta \cdot \text{가구원 수}_j + \varepsilon_j \end{aligned}$$

- 지역가입자 부과요소의 적정성 : 오직 근로·순사업소득만 사용할 경우,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요소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비해 직역간의 형평성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소득 및 총자산 수준은 기여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자동차 및 가구원수는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현재는 단순 근로·사업소득에 부과하는 것보다 기타소득 및 자산을 포함하되, 자동차 및 가구원 수 등은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그 외 보험금부담 기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를 찾는 노력이 보험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음.

IV. 보험료부과체계의 개편 방향

□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

-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 체계 수립
- 사회연대성에 기초
- 국민의 수용성 고려
- 보험료부과의 합리성과 행정편의성 확보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 개발

□ 부과요소의 선택

- 단기 :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
 -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로 계속 활용
 -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

○ 중장기 :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 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예: 재산)의 도입여부 검토

- 소득기준 부과체계에서 모든 소득을 망라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담능력을 그대로 반영
-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소득 외에 기본보험료 도입 검토

〈표 6〉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별 해결 시점 비교

문제점		해결시기		비 고
		단기	중장기	
부과체계의 이원화	직장과 지역간		◎	소득과 기본보험료로 단일 부과체계 설계
	지역내 이원화	◎		500만원 기준 이원화를 소득, 재산, 기본보험료로 단일화
형평성 결여	부과요소의 차이	◎	◎	단기에는 지역내에서 부과요소의 차이를 해소하고 중장기에는 지역과 직장간 차이 해결
	자격의 차이		◎	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 취득
	부담 의무		◎	장기적으로 단일화된 부과체계에서 부담의무도 같아짐
	소득 산정기준		◎	소득, 기본보험료 형태의 단일부과체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기준의 소득 산정체계 적용가능
부과체계의 역진성		◎	◎	단기적으로 일부 개선하나 수용성을 감안 단일부과체계에서 완전 해결
복잡함		◎		지역부과체계의 이원화, 부과요소 사용의 중복 등 문제를 단기 방안에서 해결

□ 부과체계 개편 방안

○ 단기 : 직장

-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형제 자매 전체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피보험자로 전환 : 사업장 등록과 상관없이 모든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직장가입자의 기타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 단기 : 지역

-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제외
- 지역 부과체계 단순화 ; 두 번 사용되고 있는 재산 요소를 통합
- 개인별 부과점수를 구분하여 세대 분리 등에 따른 민원에 대비 ; 이를 위해 현행 성, 연령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 신설
- 기본 보험료 신설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 아동 제외
- 역진성 개선

- 지역부과체계에서 500만원 기준선 폐지
- 평가소득 개념을 폐지하고 과세 소득 기준으로 부과
- 일정기준 이하의 전월세(예: 1,000만 원 이하)는 부과 과표에서 제외
- 재산에 대한 부과비중 인하

○ 중장기

-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 특수직역 자영자 약 1백만(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2백 5십만 명)명, 5인 미만 자영자 중 약 7십만 명³⁾(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1백 8십만 명)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 단일부과체계는 기본 보험료와 모든 부담능력을 포함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 단일부과체계 적용 방안 : 임금소득 및 1인당 정액 기본보험료 형태로 부과
- 보험료의 50%는 현행처럼 사용자가 임금수준에 따라 원천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세대원수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임금과 그 외 기타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
- 따라서 사용자에게 대한 보험료율과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됨.
-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 기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 보험료만 부담
- 기본 보험료는 18세 이하 아동을 제외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액을 적용하여 모든 적용대상자가 피보험자 자격 획득(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반인 기본 보험료의 50%를 적용할 수도 있음.)
- 사용자 부담분은 원천 징수하고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보험료를 산정하나 세대별 합산 부과 고지

V. 건강보험 재정전망

□ 2020년의 보험 재정 규모는 2010년 약 33.9조 원보다 약 2.58배 증가하여 87.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추세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규모

〈표 7〉 건강보험지출 전망 2015~2050 (base year=2009년)

(단위: 십억원)

연도	예상GDP	재정소요액	필요보험료율	GDP 대비 비중
2015	1,368,023	56,753	7.28	4.15%
2020	1,682,088	87,407	9.12	5.20%
2025	1,940,554	121,433	10.99	6.26%
2030	2,238,734	162,128	12.71	7.24%
2035	2,418,890	195,000	14.15	8.06%
2040	2,613,542	226,013	15.18	8.65%
2045	2,737,353	244,955	15.71	8.95%
2050	2,867,030	257,120	15.74	8.97%

3)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V. 재원 확보를 위한 제언

□ 향후 경제성장률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이하로 설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낮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8〉 선행연구에 나타난 잠재GDP성장률 전망치 비교

(단위: %)

		01-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KD(한지회), 2002	제도개선	5.2 (03-12년)				
	현재수준	4.6 (03-12년)				
KDI (김동석), 2004	시나리오1	4.57 (03-10년)	4.23	2.94	1.59	0.62
	시나리오6	5.09 (03-19년)	4.76	3.43	2.22	1.73
한국은행(박양수, 문소상), 2005	중립적전망	4.6 (05-14년)				
	낙관적전망	5.2 (05-14년)				
	비관적전망	4.0 (05-14년)				
조세연(박형수, 류덕현), 2006		4.66	4.22	2.90	1.56	0.93

자료: 장인성(2007), 한국의 실질GDP 장기예측: 2007-2050년,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성장률은 임금인상률과 관련이 있고 임금수준은 보험료 부과기반이 됨.

- 향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보험료 부과 기반인 임금의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별도 차원의 보험료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표 9〉 보험료 변동 추이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가율 평균
보험료 증가율(%)	20.28	23.80	12.85	10.16	11.41	16.41	14.99	6.12	8.59	15.04	13.97
보험료율인 상율(%)	6.77	8.54	6.75	2.38	3.90	6.50	6.40	0.00	4.90	5.82	5.20
부과기반 증가율(%)	12.66	14.06	5.61	7.61	7.19	9.33	7.97	6.12	3.50	8.72	8.28
경제성장률(%)	7.2	2.8	4.6	4.0	5.2	5.1	2.3	3.7	6.3	3.6	4.48

□ 보험료 재원의 다양화 방안 강구

- 최적조세 이론의 관점에서 보험료와 국고지원의 관계

－ 조세로 인한 후생비용이 세율의 제공에 비례한다는 “역탄력성의 원칙”⁴⁾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조세수입을 각 세원에 분산할 경우 각 세원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조세율 A 와 $(B+C)(=A)$ 의 후생 비용 비교
- 조세율 A의 후생비용 = A^2 , 조세율 $(B+C)$ 의 후생비용 = $B^2 + C^2$
- $A^2 > B^2 + C^2$

□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조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고년령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저년령층의 부담은 감소하게 됨.
- 소득 증가에 따라 각세대별 한계 효용이 같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 될 수 있음.
-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조세연의 보고에 따르면 보험료 대비 조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년령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의 현재 상황은 상대적으로 저년령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 보험료 대신 조세의 비중을 늘릴 경우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보험료의 감소는 노동 소득세의 감소와 소비세 및 자본소득세의 증가를 야기함.
- 노동소득세 감소와 소비세 증가를 통한 자본축적 증진효과와 자본소득세 증가를 통한 자본 축적 감소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음.
- 조세연의 연구결과 : 소비세 비중 증가에 따른 자본스톡 증가 효과보다 자본소득세 비중 증가에 따른 자본스톡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단기적으로는 자본 스톡의 감소폭이 노동공급의 증가폭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작게 나타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비중 하향조정은 경제의 양적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적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료 비중이 낮아질수록 국민의 후생수준은 높아지므로 현행 건강보험 재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

4) Ramsey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게하고 탄력성이 낮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이 후생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최적의 조세이론임.

토 론 문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장안대학교 교수)

1. 문제 제기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 제기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비율('09) : 58.2%, OECD 71.7%)
- 국민의료비 급증과 건보재정 불안 : 현재 보험료(약33조,2011년)보다 약2배 증가예상, 2020)
 -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등
- 건강 재정수입구조의 구조적 문제
 - 직장과 지역 보험료 비중이 매우 높음 : 80% 상회(나머지: 정부 보조금 및 기타)
-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만고조(주제발표에 잘 지적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직장가입자중 보수외 소득7,200만원 초과자 추가보험료
 - 형성성 문제 : 피부양자 유무(직장 - 있음, 지역 - 없음)
 - 실직하면 보험료가 더 오르는 기현상, 위장 취업 등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제기

- 건보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 : 6,363만건(전체 민원의 82.0%)
(직장, 지역, 피부양자 자격변동 : 5,836만건)
- 여하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

2.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
- 부과체계의 2원화 문제를 1단계(단기), 2단계(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칫 시간만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1999년 자영업자 소득 파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했으나 성과는?, 국민연금 개편논의 진척은?)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소득뿐 아니라 소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방안 제시: 찬반 논쟁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시점
 - 찬성 : · 보험료만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면 소득의 13%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임.
 -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하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택이라든가 제시(* '무상의료' 주장도 제기)
 - 반대 : · 소비에 부과는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남겨둬야
 - 소비에 보험료 부과 2중부담 문제 초래, 저소득층에 부담이 커짐
 -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증가 등
 - 기타 : 국고지원을 20%에서 30%로 증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 참고(1) :
 - 소득과세의 불완전성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 체계의 단일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소득자료 확보율을 90%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참 고(2) :

- 소득과약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등 소비세 기준의 건강보험 재원의 확보 방안을 OECD 권고(2010)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역진성 문제에 대해 모 정부출연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않다는 연구결과(∴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 기초생활 필수품등 다수)도 있음.(10.22, 헤럴드 경제)

3. 조세의 비중을 늘리자는 제언과 관련하여

◦ 역탄력성의 원칙은 이른바 “Ramsy Rule : $\frac{\Delta X}{X} = \frac{\Delta Y}{Y}$ ” <<조세부담에 따른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려면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출발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frac{t_x}{t_y} = \frac{\epsilon_y}{\epsilon_x}$)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후생비용이 최소화)한다는 이론임.

그러나 이 이론은 세수를 확보한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지적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참고 :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중심의 부과체계가 고용과 성장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OECD 2009, 전체 고용 5 ~ 6% 감소)

- 조세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재정이 년금을 포함하여 복지비용 증가 부담을 한꺼번에 모두 고려해야 함(2013년 예산안 복지분야 비중은 정부 총지출의 28.4%임)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부담증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고려해야 함.
 - 내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0%로 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음

4. 추가적 논의 : 지출의 합리화 등

- 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출의 관리도 동시에 노력해야 :
예 :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자 마일리지제 도입 : 보험료 할인(치료에서 예방으로) 과잉진료의 문제
- 기타 : 정치권 책임 있는 역할 - 보장성 확대(복지 증진)만 증폭시키지 않도록 조심
 - 나라의 공간을 동시에 걱정해야(복지 증대만 강조, 증세방안 언급은 미온적)

토 론 문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는 보험료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사회연구원이 선도적이면서도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 마련된 개선전략안들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아,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의미 있게 이끌어 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발표문은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외의 사례, 최신 실증연구 내용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의 단기/중장기 전략과 건강보험재원에서 보험료 대 조세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현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본 발표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과체계의 이원화, 지역간 형평성 결여, 부과체계의 역진성, 부과체계의 복잡함 등은 타당한 비판이라고 판단됨.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바뀌어 왔으나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재정’은 통합되었으나 부과체계는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 된 상태로 지속되어 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음. 이와 같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재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부과체계 통합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인 소득재분배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복지적인 형평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크기가 조정되어지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수직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분리된 부과체계로 인해 지역간 다른 부과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향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자명할 것이므로, 제도의 한계분석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본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본 발표문에서 제시된 개선전략, 즉, 지역간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 부과체계 수립,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본보험료의 도입,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엄격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제외 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 물론, 이상의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제시된 전략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증적 데이터와 핵심적 쟁점에 대해 홍보를 잘 수행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취한다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됨.

- 본 발표문은 건강보험제도의 '수입적 측면'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도 개편에 있어 핵심적 고려사항이기 때문임. 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바로 '지출 측면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장비 및 병상의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행위별 수가제도의 개편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급성기의료 병상수, 1인당 의사진찰건수, MRI 및 CT 보유대수, 약제비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의료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4병상보다 높고,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만성과 급성기 병상의 구분이 없고, 수익 지향적인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제로 인해 병상의 계획적 운영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출통제 장치 미비에 따른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됨. 이는 건강보험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급여비 지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될 때, 재정균형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따름.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GNP 증가율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재정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보장성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현재는 가격만 통제하고 수량을 통제하지 못해 총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위기 시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별 병상 총량제, 1차 의료기관 주치의제도,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의료비 총액계약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함.
- 물론, 이상의 지출측면 개혁은 수입측면의 개혁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내재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치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중장기적으로 세밀화 된 추진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수행의 유력한 주체는, 최근의 사회적 공론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낸 공단 및 보사연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결론적으로, 지난 9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작업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본 발표문에 나타난 개선전략 역시, 국민적 공감도와 대안의 합리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임.

토 론 문

김 선 희

(한국노총 사회정책 국장)

부과체계 개편 및 자원 확보 방안

1.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근로빈곤층 등 국가에서 책임질 저소득층의 비율에 대한 논의 필요

- 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가구가 전체가구의 약 15%인데 반해 수급율(국기급여 소득 있는 가구/전체 가구수)은 5% 안팎에 불과하여 약 1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 근로빈곤층이 전체 근로자의 10.6%에 이룸. 근로자의 10명 중 1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대상에도 빠져있고 거의 저임금이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전체 인구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근로빈곤층 약 700만명(305만 가구, 전체 인구의 14.3%)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약 310만명(전체 인구의 6.3%)	
최저생활비 이하	기초 수급자 약 156만명(전체 인구의 3.1%)	적용제외(부양가족) 수급자 약 103만명(전체 인구의 2.1%)

2. 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할 만큼 사회적 준비가 되었는지...

- 지난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이 건강보험료 지원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부정수급 문제도 국감에서 드러났음.

* 올 8월 말 현재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은 총 48만5135명(지원액 544억2400만원) 가운데 3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0억원 이상 자산가가 1명, 100억~200억원 2명, 50억~100억원 21명, 40억~50억원 22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비롯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만 1378명에 이른다

-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815만명이 고용보험, 1000만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음. 국민연금 생계형 채납자가 487만명, 건강보험료는 310만명에 이룸.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 즉 국가 책임의 '사회임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2%의 4분의 1 수준(8%)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마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경향신문).

- 즉,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소득(자산포함) 파악을 제고 방안과 건강보험 이외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가 중요함.
- 예로 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와 사업장 등록과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제외 등 요건들이 강화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 발생할지 우려됨.

3. 외국 부과체계 비교의 어려움

- 건강보험 체계 및 사회적 합의와 수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상이하여 부과체계를 비교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국가재원 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비율, 목적세 등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4. 최근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

-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유리지갑 인식. 결국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과약율이 관건임.
-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자의 구분(구간나누기)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까지 확장한다면 금융소득의 경우 부채에 대해서? 양도소득의 경우 빚을 얻어 구매한 집을 다시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경우에는?
-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요소'를 반영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자산을 구간별로 나눠 반영비율을 차등화시켜야 하는 것인 아닌지.
- 결국 중장기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되려면 우리 사회내 '분배'를 어떻게 적정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 모두 보험료는 내고 있는 문제

5. 사회보장목적세 신설

- 한국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부담률은 3.35%, OECD 평균 3.4%와 같은 수준임에 반해, 기업과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2.56%로 OECD 평균 5.9%의 절반도 안됨.
- 진보신당(안)

- 대기업의 경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 비해 세금부담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5대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약 700조원(2010년)으로 국가 전체 GDP(약 1,170조)의 약 60%이고, 총자산 규모는 622조원으로 GDP의 50%를 넘고 있으나, 그 동안 부담한 법인세는 지난 6년간 약 25조원으로 연간평균 4조원 정도로(2010년은 약 6조원) 매출액의 1% 이하이며, 전체 국세수입(2010년 170조)의 3% 정도에 불과함.
- 이에 법인세 기준 5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사회에 기여토록 함. 5억원 이상 법인세 납세기업은 약 5천여개이며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2,400여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됨.
- 5억원~100억원 기업은 15%, 100억원 초과기업은 30%의 사회복지세율로 정함. 이 경우 사회복지세는 7조 4,681억 정도로 추산됨(2008년 세액 기준).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안)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의 필요성

○ 도입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건강보험 체납자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하여 목적세를 신설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

○ ‘조세’와 ‘보험료’의 차이

-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보험방식’은 기여(contribution) 여부에 따라 급여혜택의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조세’ 방식은 기여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자에 대한 보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보험료 체납자 문제 발생하지 않음.

○ 부담금 대상

- 대기업, 제약사, 보험회사 등에 부과

○ 부담금 기준

- 예시) 2009년 1000대 기업 총매출액 1700조원의 0.2% 적용
2009년 보험업계 총보험료 수입 120조원의 1% 적용

6. 그 밖에

- 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나 조세방법에 대해 동의함. 소득과악율 계획 병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함.
- 간단 질의 : 건강보험지출 전망 데이터에서 지출구조합리화나 자연증가분, 보장성 등에 대해 어떻게 보정을 했는지.

토 론 문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1. 비교 가능하게 소득은 보수월액으로 표기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연 500만원 을 기준으로 하기에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아래 주제발표문의 내용도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표 1> 보험료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요소)	임금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 ~ 7,810만원	20점 ~ 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이 아닌, 그냥 500만원이라고 표기하여,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으로 표기한 것과 비교가 힘들고,

직장가입자식으로 보수월액으로 표기할 때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월소득 42만원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방식		보사연 방식	의료개혁국민연대 방식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연간 소득)	지역가입자(보수월액)
부과 기준(요소)	임금소득 (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 - 42만원 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42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정률(5.80%)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0.0원)	
상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 ~ 7,810만원	20점 ~ 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2. 이미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제 발표문 제12쪽에는

중장기 방안

－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 특수직역 자영자 약 1백만(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2백 5십만 명)명, 5인 미만 자영자 중 약 7십만 명(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1백 8십만 명)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이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계층에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나,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이 35만원~125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012.7.1 부터 전국 확대 시행)

1.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2. 지원기준

※ 국민연금 사업장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1)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소득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고시금액의 하한선 이상 상한선 미만인 근로자

→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한선 및 하한선('12년 기준)

• ◎ 상한선 : 125만원

• ◎ 하한선 : 35만원

자료출처

: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2.jsp?seq=10880&cPage=1&cmsId=news&SK=subject&SW=소규모사업장

또, 서울시는 4인가구 기준 약 월174만원(1인가구 기준 월46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저소득층 6만명에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2012. 10. 23 (화)

...기초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6만명에게 4인 가구 기준...정부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만명을 뺀 29만명이 최저기준을 밑도는 삶을...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

[조선일보](#) > [사회](#) | [이위재기자](#) | [관련기사](#)

분야별 서울시민 복지 기준

분야	최저	적정
소득	가구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73만8000원) 보장	서울시 전체 가구 중위 소득의 50% 수준(월 200만원) 이상
주거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주거 공간 43㎡(13평)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 4인 가구 기준 54㎡(16평) 주거 공간 확보
돌봄	가구 소득의 10% 이내에서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이용	10분 이내 거리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품질 OECD 평균 수준
건강	걸어서 10분 이내 보건지소 이용,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교육	교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교육 여건의 지역별 격차 해소	의무교육의 질이 OECD 평균 수준, 평생교육 기회 증진

따라서, 발제자의 아래 표 부분에 대해 의료개혁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현행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령	4구 간[(1.4점~ 6.6점)×인원]	30등급	*과세소득	75등급
	재산	7구 간[(1.8점~12.7점)]			
	자 동차	7구 간[(3.0점~21.3점)×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원		(과세소득+재산 + 자동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18.6%)	

3. 의료개혁국민연대의 대안

이상과 같은 현행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단순화하고, 월소득 42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자는 방안입니다.

의료개혁국민연대식 구 분	월소득 42만원 이하	월소득 42만원 초과
산정 보험료	보험료 면제	과세소득만으로 부과

4. 대안 실천 방안

가난한 지역가입자 대책

1) 의료급여자로 흡수해야

건강보험은 오랜 기간 통합이나 분리냐로 논란을 벌였습시다만, 건강보험의 실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가난한 지역가입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현재 우리 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혼동하고는 전체 건강보험(건보료 위주로 운영-흑자면 건보료 인상, 보장성 강화, 적자면 건보료 인상, 보장성 축소)을 의료급여(세금으로 운영-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복지 문제의 일환으로 건보료의 부과체계 개편과 건보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복지 문제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 가난한 건보가입자 문제의 해결책인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는 오히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금 횡령을 지적하니, 바로 잡으려 하지는 않고, 들통나니 일반회계 예산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피해가기에 여전히 문제를 지적하니 다시 국민건강증진기금=>건강보험으로 바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으로 떠밀어, 건보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1.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의 료 보 장 적 용 인 구	1,828,627	1,852,714	1,841,339	1,677,237	1,674,396	1,609,481
1종	1,028,536	1,062,263	1,024,848	1,036,291	1,071,686	1,087,268
2종	800,091	790,451	816,491	640,946	602,710	522,213

주 : 1) 연도말 기준

출처 :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가의 발전상에 맞게 의료급여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드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던 것을 바로 잡아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대폭 흡수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만 금번 토론에서도 이러한 가난한 건보가입자를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는 방안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고, 건보재정은 사상 유례없는 흑자 기조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건보료를 인하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동안 묵묵히 제역할을 충실히 행한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이 되는 부과체계 개선안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2) 지역가입자의 법률상 변천 과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2.29>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를 '모든 사업장'이던 것을 아래 오른쪽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꾸었던 것을

2003년 6.27에 아래 왼쪽 표와 같은 내용으로 5인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다시 축소하여 80시간 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전의 오른쪽 표의 내용(임업,어업 등)보다 더 가난한 분들만을 지역가입자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바꾼 후	개정 전(바꾸기 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28호, 2003.6.2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285호, 2001.6.30, 일부개정]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3.6.27]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 농업 나. 임업 다. 어업 라. 건설업 마. 가사서비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아.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 자동차판매업 차.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타. 이용 및 미용업 2.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이후 현재는 위 왼쪽과 같이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바뀌어 이전보다도 더욱 더 가난한 분들만 지역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되어야만 하는 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적용키고는 소득 이외의 재산,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경제활동 참가도 등까지도 고려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혼동하지만 알아도 벌어지지 않을 일을 갖고 지역가입자가 누구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법적용을 하여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83호, 2010.9.17, 일부개정]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17>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 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역가입자 규정 안 지켜져

주제발표문 제1쪽

〈표 2〉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현황(2012년 현재)

구 분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 가 율 (평가소득)	성·연 령	4구간[(1.4점~ 6.6점)× 인원]	30등 급	*과세소 득	75등 급
	재산	7구간[(1.8점~12.7점)]			
	자 동 차	7구간[(3.0점~21.3점)× 대수]			
	소득	1점 ~ 10점(50만원 당 1점)			

재 산	50등급 (22점~1,475점)	재 산	좌동
자동차	7등급 (18점~ 217점)	자동차	좌동
산정 보험료	(평가소득+재산+자동차)×170 원	(과세소득+재 산 + 자 동 차)×170원	
세대 수('11.7)	6,369천 세대(81.4%)	1,452천 세대 (18.6%)	

이러한 보사연의 자료 표2의 맨밑의 세대수는

다시 말씀드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이와 같은 분들의 숫자가 6,369천 세대 + 1,452천세대(16,042,591명,7,887천세대 :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가 되게 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얼마나 법을 잘못 적용하며, 직장가입자가 되어야만 할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잘못 적용하며 지역가입자수를 늘려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수를 늘려잡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건보공단의 직원 숫자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건보공단은 직장과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의 이점인 인원 조정이나 관리운영비의 절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행령 별표4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을 너무도 복잡하게 만들어, 담당 직원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자기의 건보료가 얼마인지 계산도 못하게 만들어,

결국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담당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건보공단의 직원수는 늘어나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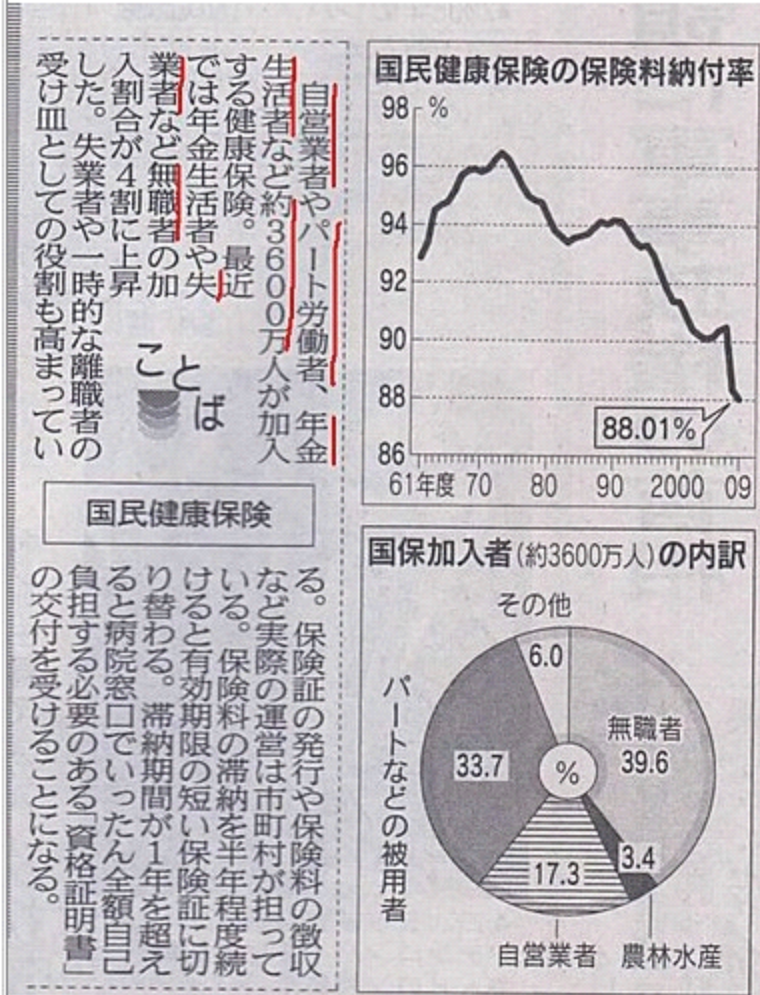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애꿎은 지역가입자들이 가난하면서도 건보료는 더 내고, 이들 지역가입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들 가난한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과체계의 개선에 앞서 지역가입자 수를 실제 법규정보다 늘려 잡은 것을 바로 잡아야
만 하며,

현행 법령이 지역가입자로 정한 위 1,2,3호의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자로 흡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일본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일본에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2011.2.5. 일본경제신문 5면>

인구 약1억2천만명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3,600만명(국민의 약 30%)이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무직자, 농림수산, 자영업자, 파트타임 고용자 등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는 가입자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난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건강과보험과는 다른 제도인 일본 국민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지원 혜택도 못받아

법으로 규정하여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원해주도록 해놓고도

단 한 번도 하위령을 만들지 않고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지원해주지 않아,

그러한 불법성을 지적하니,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해주려면 국가재정이 많이 들게되니까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지역가입자 수를 줄였고,

다fms 한편으로는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50%는 사용자가 내주는 것에 맞추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지원에 대한 별도로 만들었던 지원 규정 조차도 아예 없애 버리고는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③삭제 <2006.12.30>

기왕의 국고지원금에 뭉뚱그려 (법제92조)

결국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운영하며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국가의 지원은 일체 없이 본인들이 건보료를 100% 내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위원회나 토론회에는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역가입자의 문제가 오늘에 이르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보사연에서 준비한

'3)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이라는 것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직장가입자 중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지, 사각지대에 놓은 가난한 지역가입자 분들에 대한 방안이 아닌 것입니다.

5)정부측의 문제

<표 3> 프랑스 의료보험 재정주체별 부담비율

구분	내역		비율(%)	
보험료	피보험자	총임금의 6.8%(1991)→ 5.5%(1997)→ 0.85%(1998~)*	3.4	54.5
	고용주	총임금의 12.8%(1998) → 13.1%(2010)	51.1	
정부	국고보조	보험료 결손에 대한 보상		4.9
	일반사회기여금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34.6
	사회보장목적세	담배소비세, 알코올소비세, 의약품광고세, 자동차보험세, 전문제약업체세, 연대사회기여금, 누적채무변제를 위한 기여금(CRDS)		4.1
의료보험 간 조정				0.3
기타				1.6
계				100

주) French Ministry of Health (www.sante.gouv.fr)

프랑스의 경우도 정부측의 역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재정도 아래 국회의 문서에서 보듯이

수입과 지출이 건보재정의 핵심이며

그 중 보사연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원확보방안은 수입측면만을 본 것이고,

수입 중에서도 민간부문의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정부측의 문제인 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국고지원금 문제, 건보재정 운영상 얻어지는 수익인 기타 수입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내용은 없어,

의료개혁국민연대는 정부측의 문제점(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국고지원금 문제, 건보재정 운영상 얻어지는 수익인 기타 수입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문제 등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제81쪽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입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 보험료 수입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5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 담배 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9,568
· 기타수입	1,657	2,298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365	4,202	4,082
지 출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8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 관리운영비	7,101	6,568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 기타지출	963	949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누적수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 현금흐름 기준

* 자료 : 보건복지부

가. 국가가 덜 내고 있는 국가부담 건보료의 실상

공무원 정원 현황 (2007.6.30현재) (단위:명)(자료출처:행정자치부)

총계	행정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969,469	600,502	347,247	3,421	15,482	222	2,595

이처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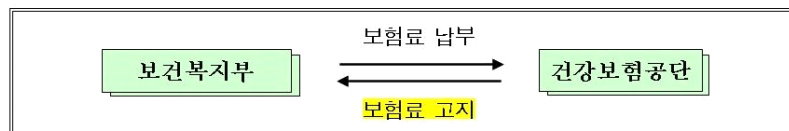
2011년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국가공무원이 60만명이 넘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50%의 건보료는 자신이 내고, 50%는 사용자인 회사가 내주듯이 공무원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50%는 국가공무원 본인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인 그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인 각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본인이 내는 것은 제대로 내는데,
국가가 내야 하는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은 각 부처의 장관이 내지를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괄하여 내는 불법적인 징수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추진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보험료를**

고지하면 보건복지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국가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현저하게 줄여서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부담 국가공무원분 건보료는 보시다시피 실제받는 임금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표준임금으로 계산하여 내는 바람에 결국 국가는 건보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건보료는 정산을 하여 더내고, 덜내기도 하는데, 국가부담 건보료는 적게 내고도 정산 한 번을 하지 않는 불법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에까지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건보료 정산으로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제도인 국가부담 건보료 미납 문제를 법대로 제대로 내서 가난한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야말로

수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 개선인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배분하여 부처별 관리운영비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라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문건에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올린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하겠다고 2007년도부터 해마다 부대결의까지 하고도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가 2012. 9.28. 국회에 올린 2013년도 예산안에도 2012년도 6,044억원에서 2013년도는 7,039억원으로 약천억원 정도 늘려서 국가부담 건보료를 낼 것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올렸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는 각 부처 운영과 관련된 관리운영비의 성격을 띠는 바, 차년도 재무결산 부터는 각 부처별로 배분하여 부처별 관리운영비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라는 각 부처별로 국가부담 건보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지적을 여전히 무시하고 복지부가 일괄하여 내는 것으로 올렸고, 여전히 국가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국가부담 건보료를 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부과체계를 만들어 건보재정을 확보하려 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기왕의 현행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부측의 불법적 행위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입니다.

나) 사립학교분 국가부담 건보료 문제 :

지원의 형평성 문제 : 저소득 가입자 지원금으로 대체되어야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월소득 42만원 이하에 해당)인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동차와 전월세 보증금에도 건보료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생활비도 지급하고 등등의 혜택을 주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월소득 42만원 이하인 분들이 얼마나 가난한 분들인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유리지갑이라며 직장가입자는 두둔하면서, 지역가입자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채,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제대로 파악안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분들인데도 이런 가난한 분들 까지도 포함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몇 %에 불과하다고 하는 지적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가난한 국민에게는 악착같이 건보료를 거두면서도 사립학교에는 2012년 한해에만 1,866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 돈 1,866억원을 가난한 사람들의 건보료를 안내게 해주는 쪽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왕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건보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대학생 반 값 등록금, 무상보육...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국 그런 것이 각종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겐 건보료를 덜 거두고, 부자에겐 더 거두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원성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소득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과 건보료(적자면 건보료를 더 거두고, 흑자면 덜 거두는 제도여야 함)도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건보료를 많이 내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그릇된 제도부터 합리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2007

사립학교교직원 : 119,682백만원

- 273천명 × 3,958천원 × 4.61% × 20% × 12월

2008 예산

사립학교교직원 : 135,487백만원

- 275천명 × 4,041천원 × 5.08% × 20% × 12월

2009 예산

사립학교교직원 : 154,561백만원

- 292천명 × 4,215천원 × 5.23% × 20% × 12월

2010년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 감 (B-A)	%	주 요 명 세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520,221	520,574	353	0.1	○ 지원대상 : 583천명 - 국가공무원 : 289천명 - 사립학교교직원 : 294천명

2011년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지원액	=	사립교직원수	×	사립교직원 평균보수	×	보험료율	×	0.2		
181,396백만원	=	306천명	×	4,410천원**	×	12월	×	5.6%***	×	0.2

2012년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지원액	=	사립학교 교직원수	×	사립교직원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부담률
1,866억 1,000 만원	=	304천명*	×	4,533천원**×12 월	×	5.64%***	×	0.2

6) 해결방안

1. 입법

정책·행정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기, 예산 편성 앞서 시행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액 산정 정확성 제고 기대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2-08-30 15:33	프린트 이메일 기사목록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 국고 지원액 산정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 시기가 예산 편성보다 앞서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 조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기가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 5월 말까지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계약체결 시기를 예산 편성 이전으로 앞당기게 되면 다음 년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년 전부터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요양급여 계약 체결 시기를 11월에서 4월로 변경할 것으로 주문해 왔다.	
윤 대표는 4월로 계약 시기가 변경되면 우선 공교국가부담의 건강보험료 미납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늑장 지급되고 있는 의료급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해 왔다. 그 동안 요양기관에 공단이 의료급여비를 부족하게 지급한 이유는 예산 편성 시 보험료율을 과소 책정했기 때문이다.	
매달 부족한 의료급여는 다음 달 예산에서 당겨졌고 이에 연말에는 수천억원의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 왔다.	
윤 대표는 "이런 늑장지급을 해결하기 위해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결정시기를 예산편성 시기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게 지원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고지원금 부족은 이미 지난 2009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전년도(2008년) 결산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보공단에 지원하는데 수년 간 정부 지원금이 법으로 정한 지원금액에서 최고 15%나 미달한다는 것이었다.	
윤 대표는 이런 국고지원금 부족이 계약 체결 시기가 조정되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 보건복지부 솔선하여 법 준수해야

가)국회의 지적

2011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 87~93쪽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연례적 과소 지급

□ '02년 이후 정부가 건보공단에 정확한 추계를 전제로 할 때 지원했을 금액(이

하 ‘법정금액’이라 한다)과 실제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10년간 총 과소지원금액이 6조 43백억원에 이르며, '11년도의 경우 법정금액에 비해 실제지원액이 22% 미달하여 1조 4,516억원이 과소지급된 상태임.

나) 관련자 문책

2012년8월 발행 2011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제86쪽~87쪽은 아래와 같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징금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00.1.1.부터 시행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최초로 마련하였음.

국민을 속인 행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써 논 글을 누군가가 지우는 테러행위까지 자행하며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거두고는 법령을 지키지 않고, 한 푼도 건보재정에 보태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징금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①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8.9.3>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05~'09년도 비교손익계산서 (건강보험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원)

계정과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다. 징수금등수입	295,671,323,103	378,904,040,078	380,956,779,300	469,002,305,516	342,036,691,614
1) 가산금	166,374,495,291	173,977,080,320	184,567,631,557	187,599,308,218	141,743,916,529
2) 부당이득금수입	53,322,762,497	102,560,645,538	75,627,682,540	107,819,174,075	104,969,346,050
3) 구상권수입	20,975,087,890	24,394,604,294	28,138,610,479	29,843,594,096	28,913,633,374
4) 공상진료비환수금	13,645,073,675	12,755,792,365	12,804,915,162	14,263,027,022	15,264,398,266
5) 요양급여평가감액지급액	0	0	0	0	0
6) 현역병등정산금	20,851,578,597	36,249,950,075	48,167,982,647	47,268,965,249	48,348,208,132
7) 기타징수금수입	1,620,006,302	1,040,180,312	1,321,556,913	1,999,362,366	2,797,189,263
8) 환수금	18,882,318,851	27,925,787,174	30,328,400,002	80,208,874,490	0
라. 기타수입	43,975,203,192	15,343,128,319	35,201,070,627	32,431,982,267	25,701,072,974
1) 교육목적사업준비금수입액	29,229,918,187	0	0	0	0
2) 특별회계전입금	0	0	0	0	0
3) 연체료	9,245,276	4,042,608	2,163,403	1,083,493	130,220
4) 수탁관리수수료	4,579,324,100	5,956,576,650	17,652,886,367	9,960,881,086	8,061,566,990
5) 과징금지원금	0	0	0	0	0
6) 자산처분이익	113,371,811	120,241,208	25,431,011	206,220,469	264,483,305
- 유형자산처분이익	0	0	0	0	263,955,571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0	0	0	0	527,734
7) 외환차익	0	0	0	0	0
8) 외환평가이익	0	0	0	0	0
9) 기부금수입	449,443,232	571,627,793	619,392,759	0	0
1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595,272	0	0	0	0
11) 대손충당금환입액	116,599,322	264,122,164	520,507,248	196,284,483	30,116,809
12) 잡수입	9,476,705,992	8,426,517,896	16,380,689,839	22,067,512,736	17,344,775,650

의료개혁국민연대의 노력 끝에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00년부터 '07년까지 매년 과징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당국은 같은 법 제 85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근거한 보험재정 정부지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00년부터 '08년까지 과징금 수입의 50%는 지원하지 아니하였음.

'07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징금 수입액의 2분의 1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 세출예산으로 과징금 요양급여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09년 예산부터 이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함.

□ 정부는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인 4조 715억 46백만원, 과징금 예상수입의 50%인 78억 76백만원,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인 1조 630억 62백만원 중 9,567억 77백만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함.

토 론 문

박 민 수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검 토 의 건

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

- ◇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소득중심의 부과체제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 ◇ 단기적으로 소득과악의 정도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시행

2.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관련

□ 소득중심의 부과체제로 가기위한 전제조건은 소득과악의 정확성임

- 소득과악의 정확성*,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개념 재정의 (소득종류별 반영방식의 형평성 문제 등**)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적 부과를 담보할 수 없음

*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없는 대상이 56%

** 사업소득 경비인정율이 약 80% 수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부과대상 소득은 같더라도 생활수준은 다른 상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반드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 근로·순사업소득 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 지역간 형평성 차이는 더 커지며(보사연, 2011), 외국(일본, 대만 등)의 경우에도 상이한 집단간에는 부과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 부담능력의 가장 좋은 대리변수는 소득이나, 자산도 좋은 대리변수 중 하나이므로, 소득과악정도,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과체계를 개편할 필요

□ 평가소득은 복잡하고 국민에 대한 수용성이 낮으므로, 평가소득의 재산요소는 통합하고, 성·연령기준은 기본보험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

- 단, 기본보험료는 인두세적 성격으로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

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설계 필요**

- * 한편,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기본보험료 부담 완화 등 구체적 형평성을 반영시, 현재의 성·연령점수와 차별성은 거의 없고, **제도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정도의 의의가 있을 것임**

3. 재원확보 방안 관련

☐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동의함

- * 프랑스, 독일 등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준)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
- 조세의 비중 확대를 통해 보험료를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을 줄이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보험료 재정 확보 가능
- *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하여 효율성 저해

☐ 보다 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재원조달 방식 마련 필요

- 보험료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를 다양한 소득원(금융·사업소득 등)으로 다원화하고,
- 조세 비중의 증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한계를 고려한 추가재원 다변화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검토 필요

토 론 문

김 동 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1. 한국의 건강보험의 첫번째 위기는 재정 문제이고, 둘째는 부과체계의 엉망으로 인한 신뢰성 위기이다.

건강보험을 법상으로는 준비금을 매년 지출액의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매년 한해 소요되는 금액만큼 걷기도 힘들 정도다. 이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는 어려워 실질적인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지역·직장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부과체계를 1년내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실현되지 못한 채 부과체계가 달라, 은퇴자들은 소득은 없는데도 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됐다. 이에따라 은퇴자들은 지역 가입자로 편입돼 건보료를 더 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직장으로 편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위장 취업자가 되려는 건보가입자들과 이를 색출하려는 건보공단의 싸움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다.

2.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은 서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신뢰를 잃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차원에서 최근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이라는 단일 부과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상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으로만 매기면 전체 가입자의 40%만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만큼 소득이 확실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이때문에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지금처럼 비슷하게 유지하는 대신, 부족분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으로 채워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물건을 살때 부가가치세를 내니까. 이 돈을 전체 국민의 기본보험료로 삼자는 내용이다.

3. 발제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는 단기개편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에선 단일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직장은 기존의 임금소득외에 연금 금융 임대 사업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과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우선 직장인에게 모든 소득에 매기는 방안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임금은 사용자와 직장인이 나눠 내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다른 소득은 개인이 별도로 내야 한다. 물론 외국도 이런 방안을 택하고 있으나 직장인의 건보료 징수가 직장 가입자로 가정에서 징수할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의 반발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히 적용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무리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없애고,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별도로 보험료를 매기던 기준선을 폐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들은 예전보다 보험료가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직장인은 더 내게 하고, 지역가입자는 줄여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계산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성·연령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를 신설하는데 20세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게 기본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의미있다. 지역은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을 다시 산정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소득 부분에 있어서 평가소득을 없애고 과세소득으로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업소득만 해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필요경비 등을 빼주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 현

실에서 과세소득은 그대로 매기는 것보다 평가소득으로 매기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비중은 소득 비중보다 발제자 견해대로 줄이는데 이의가 없으나, 소득은 이처럼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고려할 문제가 있다. 직장인은 현재 전체 건보가입자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앞으로 학습지교사나 골프캐디 등은 물론 정부가 건보료를 지원하기로 한 저소득층을 모두 직장가입자로 옮기면 직장 가입자가 80%를 넘기게 될 것이므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의 형평성은 고려할 발제자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도 지역가입자들을 직장가입자로 옮기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건보료가 싸지듯이 직장가입자들이 이질적인 성격들이 많이 포함되면 직장가입자내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중장기 방안으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 50%는 사용주가 내고, 나머지를 세대원 수에 따른 기본 보험료와 임금 그밖의 소득으로 매기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주 부담분이 커질텐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4. 건강보험 재정이 과연 지속가능할까에 대해 발제자는 앞으로 경제성장율이 낮아질 것이므로 임금 상승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건보재정을 임금상승분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결국 국가 지원, 조세로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과연 국가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현재 5%대에서 2015년 7%대, 2025년에는 11%대가 되어야 한다고 발제자는 재정전망을 밝혔다. 국민들은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도 내야 하므로 2015년이 되면 이 두개의 사회보험료로만 따져도 소득의 10%대가 넘어서고, 2025년에는 15%대가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 국민들의 월급봉투로만 사회보험료를 쥐어짜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복지 사회보장비에 드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통일까지 따지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당연해진다. 더욱이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진료비가 매년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보험료로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건보재정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부 록> 본 연구회 토론회 관련 기사

[뉴스시리즈]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시민이 관심 가져야 복지국가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8_0011201273&cID=11203&pID=11200

기사등록 일시 [2012-06-18 15:28:08]



【서울=뉴스시즈】 이득수 기자 =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연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시급한 부문에 배정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혁, 좌우 이념에 따라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를 전개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은 단체이지만 매년 3~4회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콘텐츠를 축적해오고 있다. 26일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이의영 상집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질의응답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를 설립해 3년째 이끌고 있는 이정숙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비롯해 그의 복지관을 들어봤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연구회는 2009년 10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

다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떠나서, 또 복지의 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 연구회에 구성원이 되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며 출범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해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랄까? 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이라 여겨졌던 것이 국가 중요어젠다로 떠오르며 그 수혜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 될 정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음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엔 발표 자료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시리즈’로 매주 7200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42회까지 나갔다.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페, 학회에도 올려 토론회 당일 시간을 못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복지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귀한 토론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선진사회복지’란?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홍보차 내한해 한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열린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한 강의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 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 도덕, 꿈과 희망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해, 또 돈에 의해 박탈돼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 복지,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 정부의 복지정책과 총선에서 앞 다퉈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2012년 내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또 (2000~2007)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2.3배 높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2007년)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더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전달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당,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실천이 문제다. 가급적이면 꼭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한 표가 아쉬워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공약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 찾기가 한창이다.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자활자립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그 비결에 대해 “정치가 뭐냐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죠”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 즉 복지가 먼저냐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복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도 5.5%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투명한 사회, 신뢰의 정치,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을 조언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1%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다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건강문제가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2008년 통계청)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는데....

“이태백, 사오정, 삼포시대, 허니문푸어, 하우스푸어 등 수많은 신조어는 고용의 질과 양의 불안에서 생겼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로 치솟았고 켄거루족, 신 켄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좌절, 분노, 자포자기는 자살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표출 되어 사회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소득배분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작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가지려 한다.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스 제282호(6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2012년 3.9분 연구회 주최 토론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관련 언론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80342

데일리안
YOU IS THE NEWS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조성완 기자 (2012.03.13 20:36:43)

◇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4·11총선을 앞두고 복지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과 고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상호보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면서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도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이 과장은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을 통한 복지, 노동시장참여형 복지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가칭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546>

NEW DAILY

총선 앞두고 "복지 제대로 알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선심성 복지정책 경계해야"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환 국민대 교수 등 학계서 복지정책 토론
이정숙 회장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고려해 복지정책 펼쳐야..."

- 최종편집 2012.03.09 00:25:12
-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복지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이상적인 복지는 없지만 합리적인 복지는 있다고 빔 록 네덜란드 총리가 말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토해내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정치인들 스스로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선거가 끝난 뒤 남발된 복지정책은 시민의 분노로 돌아와 정치인들은 바로 응징 받게 돼 있다”며 “각 정당은 모두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은 생각하며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기념해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인복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627> 뉴데일리(2신)

퍼주는 데 정신없는 현실정치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 제대로 접근해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학술포럼 개최
학계, 행정가, 연예계 인사 등 모여 복지정책 논의

- 최종편집 2012.03.10 00:23:57
-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참여자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이정숙 회장,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지난해 무상급식 문제가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복지 관련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공약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들일까? 또 복지공약이 이름처럼 모든 서민에게 고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긴급 토론회를 주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숙 회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여, 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기대하고 환영할 수는 없다”며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국민부담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고 1차 분배가 진행된 뒤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지,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복지는 소수의 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간다는 것은 복지의 원천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소득이기에 고용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논의됐던 것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체계의 수준에서는 성급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비용도 높고 미래를 대비해 통일비용으로 만들어 뒀던 국고의 여유분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모두 다 쓴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 란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이사장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09_0010709304&cID=10201

&pID=10200 뉴시스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이룩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2-03-09 18:35:07]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 ‘복지와 고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양자의 동시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과장, 국민대 경제학과 박기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홍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복지 거버넌스(공공행정)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미출(일반시민 대표)씨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은 재벌이라고 규정했다. 재벌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탈해 재벌 일가의 배를 채우느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박씨는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에산으로 취업학원과 직업전문학교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형편없다며, 즉시 지원을 중단시키고 취업전문 기관을 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토론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급증,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새로운 성장동력 요구 등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노동시장참여형 복지(Activation)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하는 가치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leeds@newsis.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309153414791&p=yonhap> 연합뉴스 (1신)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6> 연합뉴스 (2신)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3-09 15:32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시민 박미출씨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5> 연합뉴스 (3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7> 연합뉴스(4신)

<http://www.bokjinews.com/>  복지뉴스

“배분개선 없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제 세계화 현실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

복지와 고용 유기적 결합된 친화적 정책 필요

고용확대 막는 우리경제 모순해결은 ‘재벌해체’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1차 배분구조의 개선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경준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하며, 고용 또한 복지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뒷받침과 복지 거버넌스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적이다. 성장은 보편적복지의 지속 가능성에도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일례로 베버리지의 보편적복지를 대표하는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저성장 때문에 연금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어 대부분의 중산층을 민간연금으로 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성장과는 다른 토건과 물적자본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의 축적에 기초한 생산성주도 성장, 혁신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는 협소한 복지 개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지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내수 창출 정책이어야 하며 고용 불안정을 억제하는 고용창출 기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연령층이 빈곤에 빠지기 전에 개입해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보존하는 미래대응적인 것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 시민 토론자로 나선 박미출 씨는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우리경제 모순구조 해결의

지름길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재벌 일가의 가족 구성원인 고위 임원 1명의 연봉이면 근로자 수 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해당 기업에게도 이익이 됨을 잘 알면서도 재벌들은 가족을 늘리면서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해 2교대 근무를 하고 받는 임금과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실업수당 중 실업수당이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양산 된 위정자들의 복지정책이 낡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써의 복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복지는 결코 혜택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또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24130



성남일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정책 토론회 연다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송명용 영상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경준 교수(성균관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부서장,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030.html **chosun.com**

조선일보플라자

NEW DAILY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과 봉사 토론회' 성료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강철희 교수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

• 최종편집 2011.12.21 16:08:20



내년 총선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 문화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하를 불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주년 기념을 겸한 올해 마지막 토론회다. 연말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이므로 기부, 후원 및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빈도는 부유층이 더 많이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유층이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기부하고 있어 기부 노력도가 낮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 통계 기준 소득 수준별 개인 기부에서는 소득 상위 90%대(최상위 100%) 부유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낮고, 소득 20%대의 하위계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노력도란 소득 수준 대비 기부금 비율로, 소득 20%대의 기부 노력지수는 0.79, 소득 90%대 부유층의 기부 노력지수는 0.47이었다.

강 교수는 부유층의 나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의 향후 기부의향이 98.5%이고 이들이 기부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보고를 바란다"며 부유층 나눔 모형 개발, 계획기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획기부란 현금,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부형태로서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운용과 향후 계획을 수렴해 기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국회의원,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곽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복지자원이 중요하다"며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3조 원 가량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곽 국장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은 단체나 지역사회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나 회사제품 기부, 회사 보유시설의 개방·공유 등 다양하다. 곽 국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활동이 '자원봉사'라고 말했다. 2010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전체 직원의 76%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 43.2%나 된다.

곽 국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역시 유·무형의 이익을 본다"며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봉사 토론회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부금 규모가 0.8%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부현실과 앞으로의 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평균기부금액은 높지만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유산 등 유무형의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 마련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효율성 증대 방안 등 나눔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기부문화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기영 기자

- Copyrights © CTS기독교TV. <http://www.ct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광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하를 부른다. shoon@newsis.com



소득 상위 10%대 시민 기부노력 “꼴찌”

기부노력, 하위 20%대 시민 0.79 vs 상위 10%대 시민 0.47

강철희 교수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 촉구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규모가 17조원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노력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2주년기념 제8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철희 교수에 따르면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금 서베이 분석결과 종교포함 개인기부금 규모는 2009년 총 17조494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GDP의 1.65%에 이른다.

강 교수는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 노력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별로 기부노력의 정도는 소득수준 하위 20%대 시민이 0.79%p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위 40%대는 0.65%p, 하위 60%는 0.57%p, 하위 80%는 0.48%p였으며, 하위

90% 즉, 상위 10% 시민은 0.47%p로 기부노력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 75%, 재단 13%로 개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기부 중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나눔의 몫은 35~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들에 의한 기여가 절대적이다.

강철희 교수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의한 모범적 모형의 실재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같이 상위 부유층 1%에 의한 개인 나눔규모 중 35%까지의 기대는 가능하지 않으나 일정한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나눔행동은 계층간 사회적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자본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 ▲유산기부의 확대 및 계획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정기적 나눔 실천 및 나눔교육의 제도화 ▲세금혜택 등 관련된 제도적 유인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도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됐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또한 확대돼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용역기부를 자원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나눌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도입된다면 일대 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여론조사에서 58.3%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바라고 있다”면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서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는 “기부문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할 때 아직 세상이 더 살만하다는, 더 노력해 볼만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고문은 “한국의 기부는 미국의 2.2%에 비해 0.8%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는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를 합쳐서 볼 때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과 자아실현 및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가짐으로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며 “국민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오 고문은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나눔운동은 착한 마음으로만 하기보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 하면 끊임없이 계속돼 확산되는 운동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기증하고 자원봉사를 할 의사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방법을 시스템화해 물 흐르듯이 원하는 사람은 다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은 “나눔확산을 위해 생활 속의 쉬운 나눔, 사회적 인정 강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 기관의 신뢰성 제고, 나눔국민운동 전개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추진할 나눔정책은 ▲나눔의 제도화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 등이다.

한편 광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상생과 나눔을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대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회복지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2조8735억원이 사회공헌활동 예산으로 사용됐다. 이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이 직접 참여한 실적은 2008년 45%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2010년에는 총액 7513억3900만 원 중에서 51.1% 인 3842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광 사무국장은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사차원의 봉사조직, 표창제도, 봉사자 등록제도, 휴가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기부와 나눔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나눔과 기부활동의 외부저해요인으로 사회적 인식부족(26.4%), 반 기업정서 등 외부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4.8%)가 전체의 5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22.9%),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18.4%), 법제도의 문제점(6.6%), 기타(1.0) 등으로 나타났다.

곽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사를 분석해 보면 기업의 나눔과 기부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등록일:2011-12-20/수정일:2011-12-23



선진사회복지회, 나눔 주체 토론회 개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희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를 한 후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국장, 곽대석 CJ나눔 사무국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사in저널

뉴스시이즈]이슈진단 **NEWSisEYES**

'기부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확산 불구 아직 미미

기사등록 일시 [2012-01-09 09:08:44]

서울=뉴스시】이득수 기자 = 역사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이 100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서 나왔다고 그의 세계적 베스트 셀러 ‘로마인 이야기’에서 갈파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유럽에서 귀족들이 부와 특권을 향유하는 것만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귀족계급이 사라진 현대에는 사회 지도층이 자신들이 누리는 것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다. 카네기, 록펠러 등 대부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비영리 자선사업 재단은 오늘날 미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공헌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은 기아문제 해결은 물론 학문과 문화발전, 신흥국 원조에까지 활동영역이 광대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멀린다는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저개발국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운동인 ‘기빙 플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엔 블룸버그통신을 만든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의 부자 기업인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핏은 개인재산 58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버핏은 “부자들의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할 보관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자들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많은 혜택과 과다한 몫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회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에는 5만6000여 개의 자선재단이 있으며, 미국인들의 98%가 기부에 참여한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부문화가 폭넓게 뿌리를 내려 생활화하고 있다. 총 기부액의 77%가 소액기부금이다.

매년 연말이면 구세군 자선냄비와 종소리는 거리의 연말풍경을 연출한다. 경기가 침체해 먹고 사는 문제가 팽팽해진 올해에도 자선냄비를 통한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가 매스컴을 장식했다. 지난달 4일에는 거리의 모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억1000만원짜리 수표가 나와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90대 노부부가 1억원짜리 수표 2장을 구세군본부 본영을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했다.

전주 노송동에서는 2000년 이후 12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5024만2100원을 맡기고 사라졌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자들로 인해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눔으로 서로 감싸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세청의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총 기부금액은 8조9100억원으로 2001년 4조67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연말소득 공제 자료를 통해 파악한 1999년 기부금 총액이 2조9000억원이었으므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총 기부금액의 규모는 0.8% 정도로 미국의 2.2%에 비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창립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토론회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 하는가?’에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가 밝힌 내용이다.

강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총액은 0.54%로 미국의 1.67%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영국 0.73%, 호주 0.65%에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비율은 60대40이다. 미국이 95대5로 개인 기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별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이 높았다. 기부자

들은 기부금의 사용 희망 분야를 ‘자선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 발전’ ‘의료분야’ ‘해외구호활동’ ‘교육및 연구활동’ 순으로 꼽았다.

강 교수는 2009년에 실시한 ‘부유층의 기부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 조사는 유동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부유층 68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수치를 얻어냈다. 이 가운데는 자산 50억원~1000억원대를 보유한 부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유층들은 기부의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복수 답변 허용)이 63.6%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가치 및 자아 실현’(50%),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39.4%) 순으로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기부를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95.5%로 대부분 기부를 해본 사람이 참여했다. 가장 보편적인 기부처는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기관(88.9%), 교육기관(33.3%), 이웃(28.6%), 정치단체(2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3년 동안 평균 1억1500만원 정도를 기부했으며, 향후 기부를 계속할 의사가 있고,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약 10%였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행위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개인의 가치 및 자아실현’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 순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자들의 기부행위가 일상화하고, 동기 자체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기부금액이 국가 전체의 기부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이 75%, 재단이 13%,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7%를 차지해 개인의 비중이 거의 대다수이다. 개인 기부 중에서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기부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35%(상위 1% 부유층)~50%(상위 1~5% 부유층)나 된다. 부자들의 기부금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5%의 정확한 자선기금 출연 통계는 없으나, 관계자들은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가 적고, 기부금액도 선진국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돈 많은 거액 기부자는 이건희 정몽구 이종환(삼영기업 회장) 이명박 안철수 등 몇 사람 되지 않으며, 대부분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사재 8000억원을 사회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 이 회장의 막내 딸 윤형씨가 남긴 재산 350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들어 실현방안을 찾고 있는중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사건에서 특별사면되면서 7년 동안 사재 8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순수 개인기부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을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기탁했다. 저소득층 자녀 8만 명에게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용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정몽준 의원도 지난해 8월 범현대가 오너들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불거지자 재산의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에 331억원을 출연해 자신의 호를 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당시는 1500억원 상당, 현재는 2500억 원대)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재벌가와 대선주자급 지도층의 기부행위는 우리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소액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부참여율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의 제고, 사회통합이라는 목표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상류층, 사회지도층의 거액 출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도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낸 소액 기부금액이 모여 수 조원의 큰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부참여율이 높아야 함에도 2007년 68.6%였던 개인 기부 참여율이 2009년엔 5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기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70~80%대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기부가 확산돼야 따뜻한 사회, 함께 사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leeds@newsis.com

※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60호(1월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칼럼] '소통' 잘 해야 한다!

[2012/03/02 14:47:00]

이 정 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화가 정채되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울화통이 터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고착되어 가고 있는 소득 양극화 등으로 불안과 불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아픔을 제발 들어 달라’고 했지만 별로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40’들의 울화통이 터지고 난 뒤에야 여야 할 것 없

이 소통을 위해 나섰다.

선거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들과의 소통을 뼈저리게 느낀 정치권은 그들과 소통을 위해 SNS도 활용하고 북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소통을 하겠다고 난리들이다. 이유야 어쨌게 되었든, 무슨 목적이든 소통을 하고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소통이 무엇일까? 소통이 왜 필요할까?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할까? 소통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해 보게 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소통을 위해 SNS 역량지수를 만들고 당장 4월 총선에 ‘SNS 활용 능력’을 공천에 반영한다고 한다. 예비후보들은 부랴부랴 뒤 늦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팔로우와 친구를 늘리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한편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에 소통을 한답시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댓글을 다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모습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소통을 위해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하나 같이 듣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어디에 갔고 무슨 행사에 참석했고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 등 신변잡기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주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소통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 주는 것’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손을 오그라들게 한 이 말 한마디에 시청률이 꺾총 뛰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작년 한해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책이다.

이 둘은 SNS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너의 아픔에 내가 어떤 눈높이와 자세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가 아닌 ‘너’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려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고 있다. 비록 아픔을 직접 대신해 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서로에게 통한 것이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라고 본다.

말, 즉 소통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된 정치인, 정치권은 국민들,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그의 소재가 되어 조소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통부재는 비단 정치인,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득권층은 그렇

지 못한 계층에게 더욱 귀 기울려 많이 듣는다면 절로 가슴이 열려 말(言)이 通하고, 생각이 通하고, 행동이 通해 자연히 배려와 양보로 소통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3소’를 잘해야 한다고 한다. ‘옳소’, ‘그렇소’, ‘맞소’ 이는 상대를 인정해 주고 상생을 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선거철이다 보니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그들이다.

그래서 다들 소통하겠다,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난리들이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부디 유권자 눈높이에서 듣고자 했던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경제민주화, 잠룡들의 여의주?'-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NEWSis()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연결지은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 이 교수는 학부(고려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석사와 박사학위는 사회정책학(독일 쾰른대학)으로 받아 경제정책과 복지 문제를 한데 아우르는 고찰을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을 듣는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회복지와 경제정책의 관련성에 대해 “한 인간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때 국가가 개입해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교수를 만나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지향해야 할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산업민주주의 및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돼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민주화는 영국에서 산업화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가에 대한 힘을 강화해 노사문제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 후 산업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사관계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래의 문

제인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이 후 독일에서 산업민주화의 개념을 경제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체계화됐고, 이는 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까지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요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경제민주화가 대두하게 됐는지,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배경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정권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친 기업적 정책을 표방하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실제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동시에 불황을 맞게 됐고, 기대하던 경제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단지 일부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고, 그에 비해 서민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벌들의 높은 실적은 각종 특혜와 불공정거래를 묵인하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상인 그리고 서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달성된 것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즉,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등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인정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가격, 이자 그리고 임대료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해 단지 시장의 지배력에 의해 의사결정이 주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한 사회적 토대는 무엇이며,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해 사회 각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심판자로서 공정한 경기(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일반 대중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이하진 않다. 시민단체 등에 소속돼 불매운동, 캠페인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결정은 법과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대중이 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라는 정치적 방식이 주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 경제민주화와 국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경제의 비민주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 문제는 성장 제일주의의 결과다. 경제민주화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벌기업의 횡포나 소득의 불균형 등 분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삶의 질을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현상을 지적했다.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경쟁이 이뤄진다’는 이론은 결과적으로는 허구이며, 최종적으로는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자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독점 기업은 독점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경제민주화는 모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은 결국 독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우수한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다른 모든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경쟁이 기대하는 바일 것이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조차 자원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태적인 관찰일 뿐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산방식을 발견한 새로운 도전자에 의해 기존의 독점이 파괴될 때 가능하다. 과연 시장경제 스스로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독점하게 되는 기업은 그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시장 지배력을 활용 또는 남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만 있다면 경제민주화는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시장경제 스스로는 자유로운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과 규제는 불가피하다.”

경제주체들 간에 공정한 게임이 진행되기 위해선 심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어(Fair)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묻혀버린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leeds@newsis.com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